

국세 해설

국세에 대한 불복절차와 납세자보호제도 해설

- 납세자 권리구제제도등을 중심으로 -

전 재 원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서기관

I. 머리말

이번호에서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국세의 부과 등에 대한 불복절차와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보호 등 권리구제제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II. 권리구제제도의 의의

국세기본법에서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불복청구의 구체적 절차는 첫 번째 방법으로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이와같이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으며, 동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기에 앞서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이는 임의적인 절차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불복청구인

가. 당사자 적격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이다.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납세보증인등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도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나. 대리인

- 1) 불복청구인은 세무사(세무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포함)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불복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2)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3)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III. 권리구제 단계별 절차

1. 국세기본법에 의한 의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가. 불복의 대상

불복대상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한다.

1)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 ①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 ② 국세의 환급
- ③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
- ④ 혜가·승인
- ⑤ 압류해제
- ⑥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
- ⑦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것

2)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 ①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 ② 제3자격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3) 제2차 납세의무자의 불복

제2차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은 납부통지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납부통지의 원천이 된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납부통지된 세액의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4)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

- ① 납세자에 대한 재산의 압류·매각 및 청산(배분)의 체납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
- ②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 제3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5) 양도소득세에 관한 불복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의 예정결정 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

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여 재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이의신청·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관계

- 1) 동일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중복제기한 경우에는 지방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청구기간 내에 세무서장에게 제기된 이의신청을 심리한다.
- 2)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중복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이의신청을 심리한다.
- 3)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중복제기한 경우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항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심리한다.

2. 의의신청

가.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는 의의신청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처분으로써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 등 의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 ①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결정에 의한 처분
- ② 국세청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한 처분
- ③ 국세청의 세무사찰결과에 따른 처분
- ④ 제①호 내지 제③호 이외에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처분
- ⑤ 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 ⑥ 감사원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장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시한 과세처분은 영 제44조의2 제4호에 규정한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처분으로서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심사청구의 대상이다.

다. 이의신청의 결정기간은 30일(보정기간 미산입)이다.

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기산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제45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한 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그 처리기간 (2월)내에 받지 못 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기간종료일의 다음날
- ② 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공시송달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시송달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 ③ 국세징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의 결정을 철회하였다가 재결정하여 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
- ④ 처분의 통지서를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받은 경우는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
- ⑤ 피상속인 사망 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하여진 처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

마.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도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 한도 내에서 심리·결정할 수 있다.
- ② 동일한 처분내용에 대한 불복청구인 경우 이의신청 과정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불복의 이유를 추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 추가이유를 심리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

가. 결정절차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국세심사위원회

- 1) 법 제64조에 규정하는 국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① 국세청장이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 10인 이내
 - ②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대학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을 제외한다)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 20인 이내
- 3)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4)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인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6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5)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3조 제9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 심사청구의 결정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심사청구의 내용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속하는 것인 때
 - ② 심사청구가 그 기일을 경과하여 있은 때

다. 국세청의 심사청구 및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을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기간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은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에 의하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간은 90일(20일 이내의 보정기간 미산입)이다.

4. 심판청구

가. 조세심판원의 신설 취지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심판처리 기구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국세심판원과 지방세심사위원회를 통합한 조세심판원을 국무총리소속으로 2008년 2월 29일 신설하였다.

나. 조세심판관의 구성

- 1) 조세심판원에 원장과 조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조세심판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 2) 조세심판관은 조세·법률·회계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①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②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의 직에 5년이상 재직한 자

③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자

④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무역학·재정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의 부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임조세심판관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은 각각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i) 관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경력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의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조세심판관이 된 자

- ii) 관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경력으로 조세심판관이 된 자
- 3)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①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 ②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다. 조세심판관회의

- 1)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심조세심판관 1인과 배석조세심판관 2인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 2) 국세기본법 제72조제1항의 조세심판관회의는 주심조세심판관이 그 의장이 되며, 의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주심조세심판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조세심판원장이 배석조세심판관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
- 3) 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조세심판관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조세심판관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심판관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라. 결정절차

- 가)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그 심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소액인 것 또는 경미한 것인 경우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의 경과후에 있은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이를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 1) 심판청구금액이 3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1천만원) 미만의 것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

(나)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2) 심판청구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이외의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나) 국세기본법 제78조제1항의 경우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종전의 심판결정례를 변경하는 의결을 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그 심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1) 조세심판관회의간에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당해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기타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국세기본법 제78조제2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전원 및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한다.

라) 심판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고, 그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심리에 참석한 조세심판관의 성명을 명시하여 당해 심판청구인과 세무서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5.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 감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모든 기관의 직무에 관한 처분(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한 처분을 포함한다), 기타 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감사원장에게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감사원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청구일부터 3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6. 행정소송

가. 의의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및 절차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국세청의 심사 청구 및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의 결과통지를 받은 날 또는 결정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심사청구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피고는 행정법원에 제소한 소송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항고하고, 고등법원의 항고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IV. 불복청구의 집행에 대한 효력

1. 집행부정지 원칙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의한 불복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불복의 대상이 된 당해 처분의 집행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예외

가. 공매의 제한

처분의 집행으로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를 제한하도록 하였다. 다만, 재산의 부패,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이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불복계류 중에도 매각이 가능하다.

나. 재해조사를 위한 집행중지

불복청구인이 심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정부가 조사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재결청이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V. 불복청구 결정과 납세의무의 귀속

1. 결정의 구분

결정은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정의 최종적인 판단으로 각하, 기각, 인용의 3가지가 있고, 인용에는 취소처분,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결정으로 구분된다.

가. 각하

심사청구 등이 부적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61조 등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등의 청구 후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20일 이내)의 보정요구 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

1) 심사청구 등에 대한 각하결정사유 예시(국세기본법 통칙 일부 인용)

- ① 심사청구가 국세기본법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보정요구시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② 심판청구·심사청구 또는 의의신청을 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가 불복 제기 기간 내에 중복제기되었을 때에는 심판청구·심사청구 또는 의의신청을 각하한다.
- ③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기간 내에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심사청구가 중복제기되었을 때에는 청구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청구인이 선택하지 않은 불복청구는 각하한다.
- ④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 ⑤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 ⑥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 ⑦ 대리권 없는 자의 불복
- ⑧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전심(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흠이 없는 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도 각하한다.

나. 기각

불복청구의 본안심리 결과 청구의 취지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원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기각결정이라 한다.

다. 인용

① 취소 또는 경정결정

불복청구가 그 실체적 내용에 있어 전부 또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처분을 경정하는 결정을 말한다.

② 필요한 처분의 결정

불복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인정되어 취소나 경정으로는 불복청구인의 침해된 권리나 이익의 구제를 실현시킬 수 없는 경우의 결정이다.

2. 결정의 효력

결정은 그 통지가 불복청구인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3. 불복방법의 통지

①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제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당해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난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제기를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할 수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당해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VII. 불복청구시 불변기간의 준수

불복청구제도에서 납세자가 꼭 유념해야 할 것은 불복청구가 가능한 기일을 꼭 지켜야 한다. 이를 불변기간이라고 하며 이를 어기게 되면 청구에 대한 심리를 착수하기도 전에 각하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VII.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도입 배경

1999년 9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도입한 이후 납세자 권리신장과 함께 국세청이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는데 기여하였으나, 납세자의 권익보호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다음 각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 ① 고충민원
- ② 세무조사기간 연장
- ③ 세무조사범위 확대
- ④ 기타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안건

2.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을 완전히 배제하고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며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더 많게 구성함으로써 공정하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세 행정을 견제하도록 하였다.

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지방국세청은 18인(내부위원 8인, 외부위원 10인) 이내, 세무서는 14인(내부위원 6인, 외부위원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3군 세무서는 10인(내부위원 4인, 외부위원 6인) 이내로 구성한다.

나.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지방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과장 중 임명하는 자 7인 이내, 세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세무서장이 소속 과장 또는 6급 공무원 중 임명하는 자 5인 이내로 한다. 단, 3군 세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세무서장이 임명하는 자 3인 이내로 한다.(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

2)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 세무서는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8인 이내로 한다. 단, 3군 세무서는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로 한다.(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다.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위원장이 매회의 마다 지정하는 7인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라.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위원장이 매회의 마다 지정하는 5인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이 3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3군 세무서는 위원장과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위원장이 매회의 마다 지정하는 3인으로 구성되며, 외부 위원이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현황

2008년 5월 1일부터 90개 세무관서(6개 지방국세청, 84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우선 설치하고, 2008년 8월 1일부터는 지방소재 23개 소규모 세무서까지 확대하여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를 완료하였다.

4. 납세자보호위원회 주요 기능

가. 심의·의결 기능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 애로(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절차 등에 의하여 구제 받을 수 없는 세금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말함)에 대한 수용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세무조사 착수 후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성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나. 의결방법 및 집행

고충민원의 수용 및 조사기간의 연장 등 승인 여부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법령 해석 등에 있어 명백한 잘못이 있거나, 사실관계 등을 판단함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결을 존중하여 국세행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5. 고충민원

가. 고충민원의 정의

“고충민원”이라 함은 세무관서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 부작위 및 소극적인 행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나. 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위 “가.”에서 규정한 고충민원으로 국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 즉 애로사항이 그 대상이다.

다.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 위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① 국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②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③ 감사원장,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 ④ 탈세제보, 외화도피 신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세금관련 고소·고발
- ⑤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라. 고충민원의 신청기간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3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의 별지서식 『고충신청서(별지제4호서식)』에 의한다.

마. 불복대상에서 제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